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4. 12

다. 상 정 일 자 : 2006. 4. 18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의원

나.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에 따라
-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을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
- 회기 중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월정수당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신설(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매월 1,000,000원으로 함(안 제7조)
-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함(안 제8조 별표1, 별표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찬주)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은 매월 일백만원씩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임 :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00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중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중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7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 비고 : 1.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백지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차동차 운 임	임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상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가등급166	가등급107	140	170	195
					나등급 35	나등급12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92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79	라등급 49			
의 관			2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가등급145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30	나등급 95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70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62	라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과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단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콜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니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잠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u>회기수당</u>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기수당지급) ①회기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제7조(회기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100,000원으로 한다.</u></p> <p>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u>회의수당</u>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화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p>	<p>제명 :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 ----- ----- ----- <u>월정수당</u> ----- -----</p> <p>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p> <p>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u>1,000,000원으로 한다.</u></p> <p>제10조(준용) ----- ----- <u>월정수당</u> ----- -----</p>